

제20대 국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0. 1.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1. 구성목적	3
2. 구성일	3
3. 위원 선임일	3
4. 활동기간	3
5. 전체위원명단	4
6. 소위원회 위원명단	4
7.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명단	4

I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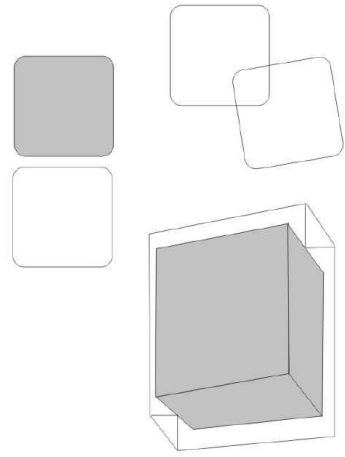
1. 개 관	9
2. 법률안 및 청원 총 350건	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6건	9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3건	20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	22
▣ 청원 19건	24

II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경과

1. 전체회의	29
2. 소위원회	32
3. 안건조정위원회	36

IV. 의결된 정치관계법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경과

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1 구성목적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구성일

제36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7. 26.) 의결

3 위원 선임일 : 2018. 10. 18.

4 활동기간 : 2018. 7. 26. ~ 2019. 8. 31.

*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2. 27.) 활동기간 연장 의결
(기존 : 18. 12. 31. 까지 → 연장 : 19. 6. 30. 까지)

*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6. 28.) 구성 변경¹⁾ 및 활동기간 연장 의결
(기존 : 19. 6. 30. 까지 → 연장 : 19. 8. 31. 까지)

1) 의석수는 18인에서 1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기로 함

5 전체 위원명단

소속 정당	위원 명	비 고
더불어민주당(8인)	홍영표 위원[위원장] 김종민 위원[간사]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김정호(박완주) 위원, (박병석 위원), 원혜영 위원, 이철희 위원, 최인호 위원	
자유한국당(7인)	장제원 위원[간사] 김재원 위원, 김태흠 위원, 이양수(이종구) 위원, 임이자 위원, 정유섭(최연혜) 위원, 최교일 위원	
바른미래당 (2인)	김성식 위원[간사], 지상욱(김동철) 위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인)	심상정 위원 이용주(천정배) 위원	

※중도 사임위원 괄호 표기

6 소위원회 위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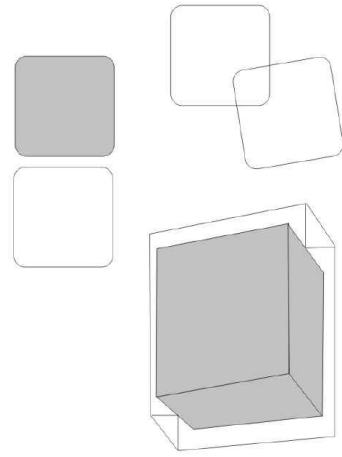
소위원회 \ 교섭단체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 1소위원회 〉 (11인)	김종민 위원	원혜영 위원 이철희 위원 최인호 위원	김재원 위원 임이자 위원 장제원 위원 정유섭 위원	김성식 위원	심상정 위원 이용주 위원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외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 〈 2소위원회 〉 (11인)	장제원 위원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김종민 위원 박병석 위원 박완주 위원	이종구 위원 최교일 위원	김동철 위원 김성식 위원	심상정 위원

7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명단

조정위원회 \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3인)	자유한국당(2인)	바른미래당(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6인)	김종민 위원장 이철희 위원 최인호 위원	김재원 위원 장제원 위원	김성식 위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직원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조의섭	
2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정성희	
3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신문근	
4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김사우	
5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정연수	
6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유인규	
7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기관	김종갑	
8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관	윤준승	
9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관	임채진	
10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관	김건식	
11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관	이상준	
12	법 제 실	법 제 관	서기관	표승연	
13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김태민	
14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이주홍	
15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이한성	
16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허라운	
17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정의선	
18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이문범	
19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김동찬	
20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	정광주	
21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관	행정주사	김상윤	
22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관	사무주사	최영숙	
23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관	행정주사보	김현아	
24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관	행정주사보	김용주	
25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관	사무주사보	임선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의안

I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의안

1 개 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6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3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 등 총 331건의 법률안과 청원 19건이 회부되었음.

2 법률안 및 청원 : 총 350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6건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	20000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16.05.30.	
2	20000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16.05.30.	
3	20003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2인	16.06.17.	
4	2000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16.06.28.	
5	20005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16.06.29.	
6	20006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4인	16.07.04.	
7	20006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25인	16.07.05.	
8	200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16.07.06.	
9	2000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16.07.13.	
10	20009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16.07.20.	
11	20010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16.07.22.	
12	2001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32인	16.07.26.	
13	2001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16.07.27.	
14	20013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16.08.03.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5	2001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16.08.04.	
16	2001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의원 등 10인	16.08.05.	
17	20015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16.08.12.	
18	2001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16.08.12.	
19	2001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3인	16.08.25.	
20	200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16.08.26.	
21	2001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16.08.29.	
22	2002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16.09.06.	
23	2002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16.09.06.	
24	2002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16.09.19.	
25	20026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의원 등 13인	16.10.17.	
26	2002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16.10.17.	
27	20026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의원 등 22인	16.10.18.	
28	20028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16.10.24.	
29	20029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16.10.25.	
30	2003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16.11.01.	
31	2003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의원 등 10인	16.11.02.	
32	2003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1인	16.11.02.	
33	2003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16.11.03.	
34	2003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16.11.03.	
35	2003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16.11.04.	
36	2003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	16.11.09.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37	20034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16.11.10.	
38	20034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16.11.10.	
39	20034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16.11.11.	
40	20035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16.11.14.	
41	2003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16.11.14.	
42	2003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7인	16.11.18.	
43	20037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7인	16.11.21.	
44	200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16.11.24.	
45	2003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16.11.28.	
46	200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16.12.02.	
47	2004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16.12.06.	
48	20044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3인	16.12.16.	
49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16.12.21.	
50	2004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16.12.30.	
51	2005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17.01.16.	
52	2005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17.01.20.	
53	2005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17.01.25.	
54	20053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17.01.26.	
55	200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17.02.01.	
56	2005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2인	17.02.06.	
57	20054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17.02.08.	
58	20055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17.02.10.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59	20055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17.02.13.	
60	200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17.02.14.	
61	20056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17.02.15.	
62	20057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17.02.23.	
63	20059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17.03.02.	
64	20059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17.03.03.	
65	2006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17.03.08.	
66	20063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17.03.27.	
67	2006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17.04.03.	
68	2006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17.04.03.	
69	2006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17.04.07.	
70	20066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17.04.11.	
71	2006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17.04.11.	
72	20067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8인	17.04.14.	
73	20067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4인	17.04.17.	
74	2006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17.04.18.	
75	2006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17.04.25.	
76	2006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17.05.08.	
77	20068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5인	17.05.08.	
78	20069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17.05.17.	
79	2006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17.05.18.	
80	20069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17.05.18.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81	20069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17.05.22.	
82	2007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17.05.31.	
83	2007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17.06.02.	
84	2007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17.06.02.	
85	2007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의원 등 11인	17.06.07.	
86	2007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	17.06.07.	
87	2007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의원 등 16인	17.06.07.	
88	2007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17.06.08.	
89	2007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17.06.08.	
90	2007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의원 등 13인	17.06.08.	
91	2007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17.06.09.	
92	20073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17.06.12.	
93	2007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의원 등 11인	17.06.15.	
94	20074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의원 등 15인	17.06.19.	
95	2007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의원 등 10인	17.06.22.	
96	2007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17.06.26.	
97	20075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17.06.26.	
98	2007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의원 등 10인	17.06.27.	
99	2007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17.06.29.	
100	200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17.06.30.	
101	2007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17.07.07.	
102	20080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의원 등 10인	17.07.14.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03	20080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17.07.17.	
104	2008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2인	17.07.21.	
105	2008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17.07.21.	
106	2008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17.07.24.	
107	2008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의원 등 15인	17.07.27.	
108	2008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의원 등 30인	17.08.02.	
109	20083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17.08.03.	
110	20083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17.08.04.	
111	2008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7.08.09.	
112	20084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의원 등 12인	17.08.11.	
113	20087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의원 등 20인	17.08.28.	
114	2008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17.08.31.	
115	20089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17.09.01.	
116	20090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17.09.04.	
117	2009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17.09.06.	
118	2009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17.09.07.	
119	2009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17.09.08.	
120	20093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의원 등 11인	17.09.13.	
121	2009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의원 등 10인	17.09.18.	
122	2009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17.09.21.	
123	20095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의원 등 17인	17.09.25.	
124	20097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17.09.29.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25	20098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17.10.11.	
126	2009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17.10.11.	
127	2010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17.11.03.	
128	201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17.11.09.	
129	2010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17.11.13.	
130	201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17.11.16.	
131	2010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0인	17.11.21.	
132	20105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17.12.01.	
133	2010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17.12.01.	
134	2010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17.12.08.	
135	20107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17.12.12.	
136	201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17.12.13.	
137	2011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18.01.16.	
138	201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18.01.25.	
139	20115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18.01.25.	
140	2011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18.01.30.	
141	2011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18.01.30.	
142	2011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18.01.30.	
143	2011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18.02.14.	
144	20123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31인	18.03.06.	
145	2012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3인	18.03.06.	
146	2012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18.03.07.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47	20124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18.03.14.	
148	20125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18.03.21.	
149	20125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18.03.21.	
150	20126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18.03.27.	
151	20127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18.03.30.	
152	2012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18.04.02.	
153	20128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8인	18.04.03.	
154	2012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18.04.04.	
155	2012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18.04.05.	
156	20130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18.04.13.	
157	2013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18.04.16.	
158	20130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18.04.16.	
159	2013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18.04.19.	
160	2013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3인	18.04.25.	
161	2013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18.04.24.	
162	2013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18.04.27.	
163	2013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18.05.02.	
164	2013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18.05.03.	
165	20134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18.05.04.	
166	2013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18.05.24.	
167	20137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18.05.25.	
168	20137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18.05.25.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69	2013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20인	18.05.28.	
170	2013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8.06.05.	
171	2013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18.06.05.	
172	20139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18.06.20.	
173	2014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18.06.26.	
174	2014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18.06.26.	
175	20140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18.06.27.	
176	2014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5인	18.06.28.	
177	2014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	18.06.28.	
178	20144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18.07.16.	
179	20145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18.07.24.	
180	20145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18.07.26.	
181	2014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18.07.26.	
182	2014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18.08.14.	
183	2014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18.08.16.	
184	20149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18.08.21.	
185	20150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18.08.23.	
186	2015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18.08.24.	
187	2015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18.08.27.	
188	20150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18.08.28.	
189	2015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18.08.29.	
190	2015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18.08.30.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91	2015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18.09.04.	
192	2015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의원 등 10인	18.09.04.	
193	2015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18.09.13.	
194	20155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18.09.17.	
195	20156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18.09.20.	
196	20158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18.10.04.	
197	2016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의원 등 10인	18.10.26.	
198	2016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의원 등 11인	18.10.31.	
199	2016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18.11.02.	
200	20163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의원 등 12인	18.11.05.	
201	20163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의원 등 11인	18.11.07.	
202	2016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8.11.07.	
203	2016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18.11.14.	
204	20168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의원 등 10인	18.11.27.	
205	20168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의원 등 10인	18.11.29.	
206	2016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의원 등 11인	18.11.29.	
207	2017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의원 등 11인	18.12.19.	
208	2017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의원 등 10인	18.12.19.	
209	2017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3인	18.12.24.	
210	20180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19.01.04.	
211	2018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의원 등 12인	19.01.15.	
212	2018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의원 등 16인	19.01.25.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213	20184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19.02.01.	
214	2018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8인	19.02.18.	
215	20186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19.02.19.	
216	2018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9.02.20.	
217	20187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9.02.21.	
218	2018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19.02.22.	
219	2018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19.02.25.	
220	20188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9.02.25.	
221	2019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13인	19.03.15.	
222	2019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19.03.15.	
223	2019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19.03.29.	
224	20195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19.04.04.	
225	20197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19.04.10.	
226	20197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19.04.11.	
227	2019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19.04.24.	
228	2020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19.05.02.	
229	2020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5인	19.05.02.	
230	2020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19.05.03.	
231	202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19.05.22.	
232	2020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19.05.22.	
233	20206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주의원 등 10인	19.05.23.	
234	2020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19.05.31.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235	202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19.06.04.	
236	20208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19.06.04.	
237	2020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6인	19.06.10.	
238	20209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19.06.13.	
239	2021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19.06.19.	
240	2021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19.06.28.	
241	2021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2인	19.07.03.	
242	20213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19.07.04.	
243	20213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19.07.04.	
244	202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4인	19.07.18.	
245	20215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19.07.22.	
246	20216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19.07.2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3건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	20005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16.06.28.	
2	20012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16.07.28.	
3	2001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16.08.02.	
4	20014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16.08.04.	
5	2001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16.08.16.	
6	20016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16.08.16.	
7	20017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16.08.19.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8	2002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5인	16.10.24.	
9	2005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17.01.23.	
10	20054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17.02.08.	
11	20059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17.03.02.	
12	20061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0인	17.03.15.	
13	200627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의원 등 13인	17.03.17.	
14	20065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17.04.04.	
15	20066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17.04.07.	
16	20067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17.04.14.	
17	200678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의원 등 11인	17.04.18.	
18	20067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의원 등 10인	17.04.19.	
19	20068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17.05.15.	
20	200737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17.06.13.	
21	20076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17.06.29.	
22	20083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0인	17.08.01.	
23	20083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의원 등 30인	17.08.02.	
24	20087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17.08.25.	
25	20095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30인	17.09.22.	
26	20104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17.11.29.	
27	20104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의원 등 10인	17.11.29.	
28	201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의원 등 10인	17.12.13.	
29	20114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18.01.22.	
30	201199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18.02.19.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31	20121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18.02.27.	
32	20130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18.04.13.	
33	20144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18.07.17.	
34	20147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18.08.03.	
35	20149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18.08.21.	
36	2015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18.09.03.	
37	20163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18.11.07.	
38	20168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18.11.27.	
39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6인	19.01.25.	
40	20195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19.04.01.	
41	20199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19.04.22.	
42	20213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9인	19.07.03.	
43	2021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19.07.30.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	20005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16.06.28.	
2	20005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16.06.29.	
3	2001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16.08.02.	
4	20014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인	16.08.05.	
5	2001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16.0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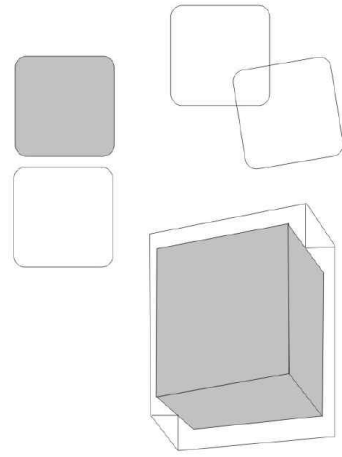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6	20017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16.08.19.	
7	200189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16.08.29.	
8	20025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16.09.29.	
9	20026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22인	16.10.18.	
10	2002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5인	16.10.24.	
11	20054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17.02.08.	
12	20059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17.03.02.	
13	2006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17.04.05.	
14	20067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17.04.11.	
15	20067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17.04.18.	
16	2007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17.05.31.	
17	20072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17.06.09.	
18	20074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17.06.15.	
19	20075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17.06.23.	
20	20076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17.06.29.	
21	2008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17.08.02.	
22	20090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17.09.04.	
23	20090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7.09.05.	
24	20095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17.09.22.	
25	20095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30인	17.09.22.	
26	201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17.12.08.	
27	2012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18.04.05.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28	20130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18.04.17.	
29	20150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18.08.27.	
30	20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18.09.03.	
31	2015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18.09.06.	
32	20153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18.09.07.	
33	20163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18.11.07.	
34	20168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18.11.27.	
35	2018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6인	19.01.25.	
36	20186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19.02.19.	
37	20190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19.03.07.	
38	20192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13인	19.03.15.	
39	20194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19.03.29.	
40	20201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5인	19.05.02.	
41	20210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19.06.19.	
42	20219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19.08.12.	

■ 청원 19건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1	20000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진선미의원	18.10.30.	
2	200002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세연의원 외 1인	18.10.30.	
3	2000028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세연의원 외 1인	18.10.30.	
4	2000029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세연의원 외 1인	18.10.30.	

연번	의안번호	심사안건	발의·제출	회부일	비고
5	2000063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송영길의원	18.10.30.	
6	200009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천정배의원	18.10.30.	
7	200009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심상정의의원	18.10.30.	
8	200009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추혜선의의원	18.10.30.	
9	2000095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천정배의원	18.10.30.	
10	200010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김종훈의원	18.10.30.	
11	200010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천정배의원	18.10.30.	
12	200010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노회찬의원	18.10.30.	
13	200010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김경협의원	18.10.30.	
14	200010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이상민의의원 외 2인	18.10.30.	
15	200010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춘숙의원	18.10.30.	
16	2000108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춘숙의원	18.10.30.	
17	2000109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춘숙의원	18.10.30.	
18	200011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에 관한 청원	남인순의원 외 2인	18.10.30.	
19	2000118	16세선거권및피선거권을위한 「공직선거법」 등개정에관한청원	추혜선의의원	18.10.30.	



II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경과

Ⅲ.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경과

1 전체회의

회의차수 및 안건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18.10.24. (수)	○ 위원장 선임 : 심상정 위원(정의당) ○ 간사 선임 - 김종민 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 - 김성식 위원(바른미래당)
제2차 회의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18.10.30. (화)	○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외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로 구성 ○ 일괄 보고 후 질의
제3차 회의 1.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2. 정당법 개정안 35건 3. 정치자금법 개정안 31건 4. 청원 19건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18.11. 7. (수)	○ 법률안 상정 및 소위 회부 ○ 대체토론 ○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경과 보고 -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 토론 및 질의응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영수
제4차 회의 1. 공청회 개최의 건 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3.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	'18.11.14. (수)	○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 8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선정 - 강재호(부산대 행정학과) - 유진숙(배재대 공공인재학부) -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 이덕로(세종대 행정학과) -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 손창열(법무법인 충정) - 조숙현(법무법인 원) -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 - 강우진(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상훈(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 -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종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회의차수 및 안건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5차 회의 1.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	`18.11.21. (수)	○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 - 김윤철(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박명호(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제6차 회의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산회 후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18.11.28. (수)	○ 기존 선정 위원 중 1인 사퇴로 인해 1인 추가 의결 - 사퇴 : 강재호(부산대 행정학과) - 선정 : 한표환(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 자문위원 간담회 - 김형오(前 국회의장) -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 김진국(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제7차 회의 1. 간사선임의 건 2. 정치개혁제2소위원장 개선의 건	`18.12.20. (목)	○ 간사 선임 - 장제원 위원(자유한국당) ○ 정치개혁제2소위원장 선임 - 장제원 위원(자유한국당)
제8차 회의 1.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	`19. 1.24. (목)	○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 - 정치개혁제1소위원장 김종민(더불어민주당) ○ 토론 및 질의응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영수
제9차 회의 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	`19. 4.29. (월)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등 11인 제출) ²⁾
제10차 회의 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계속)	`19. 4.30. (화)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김종민 위원 등 11인 제출) 무기명투표 실시 ³⁾ - 표결 : 재적 18인, 출석 18인, 찬성 12인 가결

2) 3) 제9차, 제10차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서가 접수됨(2019헌라3).

회의차수 및 안건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11차 회의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미상정) 2.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의 건	'19. 6.20. (목)	○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
제12차 1. 위원장(심상정) 사임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19. 7.23. (화)	○ 위원장(심상정) 사임 ○ 위원장 선임 :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제13차 ※ 비공개간담회 전환	'19. 7.25. (목)	※ 비공개간담회 전환
제14차 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	'19. 8.20. (화)	○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논의
제15차 ※ 의사진행발언	'19. 8.26. (월)	○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처리방안 논의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장제원위원 등 7인으로부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 제출됨(2019. 8. 26.)
제16차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9. 8.29. (목)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결) ⁴⁾ - 표결 : 재적 19인, 출석 19인, 찬성 11인 가결

4) 제16차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서가 접수됨(2019헌라5).

2 소위원회

가.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1차소위 '18.11.22. (목)	○심사안건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경과 보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논의
제2차소위 '18.11.28. (수)	○심사안건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정도로 압축하여 마련하기로 함
제3차소위 '18.12. 3. (월)	○심사안건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마련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방안 발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제4차소위 '18.12. 5. (수)	○심사안건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건 ○발제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
제5차소위 '18.12.12. (수)	○심사안건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건 ○향후 정개특위의 역할에 대한 토론 진행
제6차소위 '18.12.18. (화)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7차소위 '18.12.20. (목)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8차소위 '18.12.26. (수)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9차소위 '18.12.28. (금)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0차소위 '19. 1. 4. (금)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1차소위 '19. 1. 8. (화)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2차소위 '19. 1.10. (목)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3차소위 '19. 1.15. (화)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4차소위 '19. 1.17. (목)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5차소위 '19. 1.22. (화)	○심사안건 -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의 건 ○ 선거제도 개편 주요쟁점 집중 논의
제16차소위 '19. 6. 5. (수)	※의사진행발언, 정회 후 속개 되지 않음
제17차소위 '19. 6. 25. (화)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법안 심사 및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18차소위 '19. 6.26. (수)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법안 심사 및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제19차소위 '19. 6.27. (목)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 법안 심사 및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제20차소위 '19. 8.22. (목)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 법안 심사 및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제21차소위 '19. 8.23. (금)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 법안 심사 및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제22차소위 '19. 8.26. (월)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 심사대상 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통해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 - 표결 : 재적 11인, 출석 11인, 찬성 7인 가결

나.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외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

회의일자	심사내용
제1차소위 '18.12. 3. (월)	○ 심사안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4건 - 청원 11건 ○ 주요논의 -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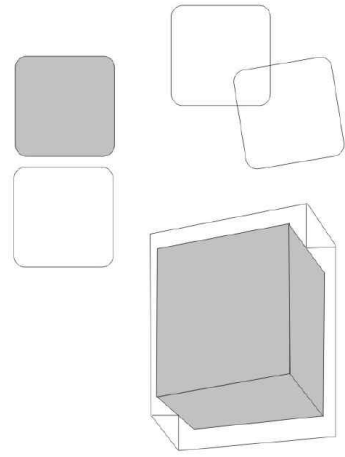
회의일자	심 사 내 용
제2차소위 '18.12. 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4건 - 청원 11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제3차소위 '18.12.19.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 청원 3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제4차소위 '18.12.2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 청원 3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제5차소위 '19. 1. 4.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9건 - 청원 7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제6차소위 '19. 1.1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건 - 청원 7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항
제7차소위 '19. 1.1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건 - 청원 2건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 -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회의일자	심 사 내 용
제8차소위 '19. 4.1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건 - 청원 6건 ○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언론에 관계된 사항

3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일자	심 사 내 용
제1차 조정위 '19. 8.27.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의 건 ○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 김종민 위원(더불어민주당)
제2차 조정위 '19. 8.2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 주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을 조정안으로 하고 이를 원안의결⁵⁾ <p>※ 표결 : 재적 6인, 출석 6인, 찬성 4인 가결</p>

5)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서가 접수됨(2019헌라5).



IV



의결된 정치관계법

IV. 의결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5
----------	-------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 의 자 : 심상정 · 윤소하 · 천정배
이용주 · 김관영 · 김동철
김성식 · 장병완 · 김종민
기동민 · 이철희 · 원혜영
김상희 · 박병석 · 박완주
최인호 · 홍영표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 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 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사.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

조제5항).

- 아.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꺾일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함(안 제200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선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명으로 분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0분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

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권역 안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변경하여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를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의 모든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후보자명부”를 “후보자명부(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권역별로 작성된 후보자명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

제5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제출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를 “등록 신청시에 후보자(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이 장(章)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본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의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 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text{연동배분 의석수} &= \left[\left(\text{국회의원정수} - \begin{array}{l} \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 \text{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end{array} \right) \right. \\ &\quad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quad \left.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right]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begin{aligned} \text{잔여배분의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quad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의석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left[\left(\frac{\text{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text{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 \frac{\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text{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right) \right. \\ &\quad \times \text{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quad \left. - \text{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right]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

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 \text{잔여배분의석수} &= (\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 \\ &\quad \text{원의석수} - \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quad \times \text{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 \text{조정석수} &= \frac{\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 \\ &\quad \text{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 \times \text{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text{원의석수}} \\ &\quad \div \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ligned}$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

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제190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9조제4항 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94조제3항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를 “의석을 재배분하고, 정당 및 권역별 재배분 의석 수에서 각 정당 및 권역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로서 같은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7조제7항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0조제2항 본문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로서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30조제6항 중 “제47조의2제1항”를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選舉區 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이하 “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
1. 大統領選舉 및 比例代表全國 選舉區 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 國會議員”이라 한다) 選舉의 選舉區 選舉事務는 中央 選舉管理委員會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② 18세-----

<p>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p>	<p>-----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 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 로 選舉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 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 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p>	<p>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정수범위(제47조의2 에 따라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 명으로 본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 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0 분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 -----.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p>

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

③ ~ ⑤ (생략)

<신설>

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

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권역 안의 지역구국회의

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	-----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	-----
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	-----
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2. -----18세-----
말한다. 이하 같다)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	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
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	분한다.
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
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	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	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p>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p>	<p>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p>
	<p>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연동배분의석수</p> $= \left[\left(\frac{\text{국회의원정수} - \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text{국회의원정수}} \right)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frac{\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text{국회의원정수}} \right] \div 2$ </div>
	<p>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p>

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text{잔여 배분의석수} = \frac{(\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text{조정의석수} = \frac{\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div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③ 의석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 \text{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 \left[\left(\begin{array}{c} \text{정당} \\ \text{이 추} \\ \text{친한} \\ \text{지역} \\ \text{구국} \\ \text{회의} \\ \text{원 당} \\ \text{선인} \\ \text{수} \end{array} + \begin{array}{c} \text{제2항에 따라 정} \\ \text{당에 배분한 총 비} \\ \text{례대표국회의원 의} \\ \text{석수} \end{array} \right) \right. \\
 & \quad \times \text{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quad \quad \quad \text{득표비율} \\
 & \quad \left. - \begin{array}{c} \text{해당 권역의} \\ \text{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end{array} \right]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 \text{제2항에 따라} \\ \text{조정} & \text{정당에 배분한} \\ \text{의석수} & \text{총 비례대표국} \times \text{권역별 연동배분} \\ & \text{회의원의석수} \text{의석수} \\ & \text{∴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ligned}$
<p>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p> <p><신 설></p>	<p>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p> <p>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 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p>

	<p>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p> <p>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p> <p>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p> <p>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p>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p>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p>	<p>⑦-----</p> <p>-----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p> <p>-----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제1항부터</p>

<p>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p> <p>⑦·⑧ (생략)</p>	<p>제5항까지의 규정----- -----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 -----</p> <p>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p>
<p>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③ (생략)</p> <p>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p>	<p>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p>	<p>-----제189조제4항 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 ----- -----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권역 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 로-----</p>

<p>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 無效 등) ①·② (생 략)</p> <p>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p> <p>1. (생 략)</p> <p>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p> <p>3. (생 략)</p> <p>④·⑤ (생 략)</p>	<p>-----.</p> <p>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 無效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항부터 제5항까지-----</p> <p>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p> <p>①·② (생 략)</p> <p>③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p>	<p>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p>-----</p> <p>-----</p> <p>-----</p> <p>-----</p> <p>-----</p>

<p>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 -----제18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p>
<p>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⑥ (생략)</p>	<p>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p>	<p>⑦----- ----- ----- ----- ----- -----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 -----.</p>
<p>⑧ · ⑨ (생략)</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⑤ (생략)</p> <p>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⑧ (생략)</p>	<p>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7조의3제1항-----</p> <p>-----.</p> <p>⑦·⑧ (현행과 같음)</p>
<p>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② (생략)</p> <p><신설></p>	<p>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p>
<p>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생략)</p>	<p>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① (현행 제60의</p>

<신 설>

의 부분과 같음)

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